의안번호	제 123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298 회)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2월 2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23

제출연월일 : 2011년 2월 25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왔으나,

○ 도정배심원제의 기능을 포괄하고 도의 주요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도정 정책자문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